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(안)

의 안 번 호	362

제출년월일 : 1994. . .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□ 제 안 이 유

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('93. 7. 31)됨에 따라 동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

□ 주 요 골 자

○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
- 인력.장비 확보,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,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 설치 등
-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의 사용자제,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

○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지도 및 지원방법
-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
- 장려금 등의 지급, 공유재산의 대부, 대형폐기물 등의 집하.보관장소 설치 등

○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의 준수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
- 위반 정도에 따라 1,000천원에서 3,000천원 까지 과태료 부과

□ 근 거 법 령

○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등 11개조항 : 불 임
○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, 제40조 : 불 임
○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 : 불 임

충청북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(안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(이하 "법"이라한다), 동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한다), 동법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충청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.

1.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·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 용기의 설치
2.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
3.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

제 3 조 (도민의 책무) 충청북도 도민은 재활용품 우선구매, 1회용품의 사용자제,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도지사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

② 시장·군수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지정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지원

제 5 조 (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)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품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자(이하 "제조자등"이라 한다)에게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 기준에관한규칙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조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 6 조 (제조자 등에 대한 조치 등) ①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행한다. 다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기간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 의 신청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조자 등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완료 신고서에 의한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장려금 등의 지급) 도지사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.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·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 및 전대알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공유재산등의 대부) 도지사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.

제10 조 (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) 도지사는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제11 조 (대형폐기물등의 집하·보관장소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시·군별로 못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집하·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재활용 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

1. 폐금속류(폐금속, 캔류를 포함한다)
2. 폐종이
3. 폐유리
4. 폐플라스틱
5. 기타 환경처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것

제3장 보 칙

제12 조 (보고 및 검사등)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상의무자·일반폐기물 수집운반자와 각 시·군.출장소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.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3 조 (청문) 도지사는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다만,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4 조 (사무의 위임)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 제4항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시·군별 집하·보관 장소의 설치 사무를 시장.군수.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.

제15 조 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등을 집하.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서 조성하는 재활용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체·재활용사업자·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 운영.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이전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장 벌 칙

제17 조 (과태료) 도지사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8 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과태료의 징수절차·방법은 법, 영, 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